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731-6656 / 전송(02)731-6956

문서번호 새정 13400-

시행일자 1995. 11. 24.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5년		
국장	전결		
과장			
계장			
기안	김태호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재정확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소득할주민세를 조정하여 조달하고, 한미자동차협상중 대형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하협상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이 '95. 11. 17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바,

2. 지방세법개정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이미 지방세법개정시에 주요내용이 입법예고('95.10.4.~10.19)된 사항 이고 또한 의회에 상정해야 할 기간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6일까지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안 입법예고(안) 시보 게재의뢰(승부)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제1항(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별첨과 같이 승부하오니 서울시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부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세 정 과 장

공

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1995-333

담당자	1139	256
부담담당관	김기	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재정확충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소득할주민세를 조정하여 조달하고, 한미자동차협상중 대형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하협상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이 '95. 11. 17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바, 지방세법개정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이다.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로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상의 세율도 이에 맞추어 10%로 하되, 동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나. 지방세법상 3,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세율이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씨씨 초과 승용자동차 세율이 630원에서 370원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상의 세율도 이에 맞추어 개정함.
- 다.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2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새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정과(731-66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